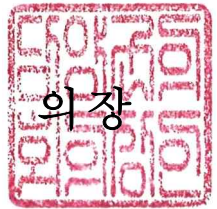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8. 25.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심사 및 제한 기준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출장 지원 인력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강화

- (현행) 주민 포함 의무

- (개정)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임원 포함 의무

나.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징계 조치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8. 25. ~ 8. 31.(6일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참가하는”을 “초청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외출장을 하는”을 “국외출장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공무국외출장계획”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설치·운영해야”를 “설치·운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을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에는”으로, “심의”를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추천을 받거”를 “추천받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사위원회 위원이 주민”을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구성되도록 해야”를 “구성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해야”를 “심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문기관”을 “방문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담양군의회”를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을 “공무국외출장일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단서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는**”으로 한다.

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중 “**담양군의회 홈페이지**”를 “**의회 누리집**”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담양군의회 홈페이지**”를 “**의회 누리집**”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심사 기준**)”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담양군의회 홈페이지**”를 “**의회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담양군의회 홈페이지**”를 “**의회 누리집**”으로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중 “**의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을 “(**공무국외출장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를 “**임기만료 1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계를 받**”을 “**징계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후단 중 “**심의**”를 “**심사**”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일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하고, 심의**”를 “**심사하고,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의회의원**”을 “**의원**”으로, “**심의**”를 “**심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않는 경우에는**”를 “**않을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보고서 심사 결과가 공무국외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내·외부 감사 기구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예산 편성·집행**)”을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함에**”를 “**수행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로, “**편성해야**”를 “**편성하여**”

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후관리 등)”을 “(사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문서고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징계 현황의 공개 등)”을 “(징계 현황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요구해야”를 “요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의원”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를 “징계받으면”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의회규칙 등)”을 “(직원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u> <u>등에 관한 조례</u>	<u>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u> <u>관한 조례</u>
제2조(적용범위) 담양군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 ----- -----.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식행 사에 <u>참가하는</u> 경우	1. ----- ----- -- <u>초청된</u>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공무로 <u>국외출장을</u> <u>하는</u> 경우	5. ----- ----- <u>국외출장하는</u>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u>공무</u> <u>국외출장계획</u> 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은 의원 및 제3항의 민간위 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 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u>설치·운영해야</u>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u>공무국외출장계획</u>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u>공무</u> <u>국외출장</u> ----- ----- ----- ----- ----- <u>설치·운영하여야</u> ----. ----- ----- <u>공무국외출장 계획</u>

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생략)

2. 대상 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생략)

4. 담양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의 당사자일 때에는 -----
--- 심사-----.

② (현행과 같음)

③ -----

----- 추천받거-----

----- . -----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 구성하여야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심사하여야 --.

1. (현행과 같음)

2. ----- 방문 기관-----
--

3. (현행과 같음)

4.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⑥ -----
----- 공무국외출장일 때는 --

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생략)

제5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② (생략)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
-----.

----- 인정할 때는 -----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5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

----- 의회 누리집 -----
-----.

제7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의회 누리집 -----
-----.

제8조(심사 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
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
장 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고려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
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
간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
른다.

<신설>

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제8조(심사기준) -----
심사기준-----
-----.

-----.

제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의회 누리집-----

-----.

-----.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
하는 의회 소속 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의원이 아
닌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
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
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2. (생략)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
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
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질
계를 받은 의원일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
정된 경우

<신 설>

의회 누리집-----
-----.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임기만료 1
년 이내-----

4. ----- 징
계받-----

5. 제4항-----

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
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일 때에

<신 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

-----, -----
--- 심사-----
-----.

제12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① -----

----- 제출하여
야 -----
-----.

② -----

보고된 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보고서를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문서고에 소장·비치하고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한으로 하며, 출장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 심사하고, 심사 -----
-----.

③ -----
-- 의원-----
----- 심사 -----

-----.

-- 않을 때는 -----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보고서 심사 결과가 공무국외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내·외부 감사 기구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

기준」 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 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시 국외 여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생략)

<신설>

제15조(징계 현황의 공개 등) ①

-----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행하는 데 -----

--.

④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 편성하여야 --.

제14조(사후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문서고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현황의 공개) ① ---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회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 또는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 의회 -----

----- 요구하
여야 --.

② 의원-----
----- 징계받으면 ---

-----.

제16조(직원 보호)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